

기타 기술규칙 적용지침 및 기준 개정

(해상컨테이너 지침)

2025.07



기 관 규 칙 개 발 팀

- 주 요 개 정 내 용 -

(1) 2025.08.01일자 시행사항(승인 신청일 기준)

◎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서 반영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생략> 제 2 장 해상컨테이너 지침</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생략> 제 2 절 제조법승인</p> <p>201. ~ 207. <생략> 208.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현행과 동일> 제 2 장 해상컨테이너 지침</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현행과 동일> 제 2 절 제조법승인</p> <p>201. ~ 207. <현행과 동일> 208. 승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증서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207.에 따라 승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에는 증서의 유효기간은 구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u> 2. <u>승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승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으자 할 경우 제조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1)</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승인제품의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있는 경우)</u> (2) <u>제품의 사양변경 또는 제조방법의 중요한 변경 여부(있는 경우)</u> (3) <u>승인제품 또는 우리선급이 인정하는 유사한 제품의 제조실적(최소한 6개월이상)</u> 3. <u>우리 선급은 전 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사한 후, 204.에 따른 공장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u> 4. <u>제조자가 갱신기간 내에 승인된 제품의 제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시험을 실시하거나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유사한 제품의 실적이 근거하여 갱신할 수 있다.</u> 5. <u>제조자의 사정으로 유효기간 이후에 갱신검사를 하였더라도 승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3월의 범위 내에서 갱신검사 신청을 한 경우, 만료일로부터 갱신검사를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에 한해 승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갱신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u>

현행	개정
<p>208. 제조법승인의 취소</p> <p>우리 선급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컨테이너의 제조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컨테이너의 시험성적이 승인 당시보다 저하되거나 승인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2) 제조자로부터 승인취소 신청을 받았을 경우 (3) 207.에 따른 제조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제조한 경우 (4) 기타 우리 선급의 승인조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2022) <p>209. <생략></p> <p><이하 생략></p>	<p>209. 제조법승인의 취소</p> <p>우리 선급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컨테이너의 제조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컨테이너의 시험성적이 승인 당시보다 저하되거나 승인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2) 제조자로부터 승인취소 신청을 받았을 경우 (3) 207.에 따른 제조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제조한 경우 (4) 기타 우리 선급의 승인조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p>210. <현행과 동일></p> <p><이하 현행과 동일></p>